

# 동반성장론 업무협약서

(구매기업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\_\_\_\_\_(이하 “구매기업”이라 하고, “은행”과 합쳐 “양 당사자”라 합니다)은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「동반성장론」 결제제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“이 협약”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과 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」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

## 제1조 (목적)

이 협약은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협력기업(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릅니다)에게 「동반성장론」을 지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“동반성장론(일반)”이라 함은 구매기업과 1차협력기업간의 경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1차협력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.
- ② “동반성장론(협력)”이라 함은 1차협력기업과 동반협력기업 또는 동반협력기업간 경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동반협력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.
- ③ “동반성장론”이라 함은 동반성장론(일반)과 동반성장론(협력)을 포함하여 말합니다.
- ④ “1차협력기업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(용역 포함, 이하 같습니다)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(일반) 관련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채권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⑤ “동반협력기업”이라 함은 1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2차협력기업, 2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3차협력기업, 3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4차협력기업 중 상위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(협력) 관련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⑥ “협력기업”이라 함은 1차협력기업과 동반협력기업을 포함하여 말합니다.
- ⑦ “상위기업”이라 함은 물품을 공급한 협력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1차협력기업에게는 구매기업을, 2차협력기업에게는 1차협력기업을, 3차협력기업에게는 2차협력기업을, 4차협력기업에게는 3차협력기업을 말합니다.
- ⑧ “하위기업”이라 함은 상위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구매기업에게는 1차협력기업을, 1차협력기업에게는 2차협력기업을, 2차협력기업에게는 3차협력기업을, 3차협력기업에게는 4차협력기업을 말합니다.
- ⑨ “상생매출채권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1차협력기업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1차협력기업부터 3차협력기업이 받은 채권금액 범위내에서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.
- ⑩ “상환청구권 없는 방식(Without Recourse)”이라 함은 은행과 협력기업간의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만기도래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
- ⑪ “MP(Market Place)”라 함은 은행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력기업간 납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을 중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,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위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MP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, 취소, 조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, 구매기업은 MP사이트에서 발행채권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제3조 (업무의 방법)

- ① 이 협약에 의한 거래는 기업 간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 거래를 하여, 1차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동반협력기업이 상위기업에 대하여 상생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.
- ② 1차협력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,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(Without Recourse)의 동반성장론(일반) 대출을 받거나,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,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③ 동반협력기업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, 채권의 만기일 전에 상환청구권없는 방식(Without Recourse)의 동반성장론(협력) 대출을 받거나,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, 상생매출채권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④ 은행은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이 실행된 경우에 건별 대출기일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당일만기 동반성장론(이하 “당일만기대출”이라 합니다)을 실행하여 협력기업 명의 동반성장론을



- 상환하고,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으로 당일만기대출을 상환처리 합니다.
- ⑤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채권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으나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대금에 대하여는 「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」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.

#### 제4조 (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발행, 관리)

##### ① (정보교환)

양 당사자는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상호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니다.

##### ② (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)

- 은행이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은행은 1차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4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
- 구매기업과 1차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1차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,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1차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

##### ③ (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)

- 구매기업이 전항에 따라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외상매출채권이 구매기업과 1차협력기업간의 실제거래에 따라 매 건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, 제8조1항에서 정한 통보기한내에 구매기업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은행에게 통보하며, 구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구매기업이 이와 같이 통보하는 외상매출채권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.
-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매 건별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통보함에 있어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구매기업이 하지 않은 통보가 있거나 통보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 어느 당사자나 양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은행의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고, 구매기업의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구매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.

##### ④ (외상매출채권명세 통보)

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명세 통보를 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하기 전에 아래 각 호와 같은 사유(협력기업의 제2항에 의한 통지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포함합니다)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이의없는 승낙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채권 통보를 보류하거나 금전채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.

- 1차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구매기업이 1차협력기업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
- 구매기업이 1차협력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(통보를 할 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)
- 1차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(가)압류가 있거나 1차협력기업이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
- 전산조작오류 등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
- 기타 구매기업이 1차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성립, 존속,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

##### ⑤ (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의 관리 및 통지)

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1차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, 1차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(가)압류하였거나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.

##### ⑥ (외상매출채권의 기본계약 등의 변경 통지)

구매기업과 1차협력기업 간에 체결한 기본계약(1차협력기업이 은행에게 양도한 외상매출채권의 기본계약)을 변경 또는 추가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

#### 제5조 (외상매출채권의 결제)

- ①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변제의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, 그 명세에 기재된 만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.



[**(주)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**]
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비 고
			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

- ②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,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증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
- ③ 만기일이 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동반성장론 취급 분을 우선 변제하고,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
- ④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 받은 채권 대금을 그 만기일에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
- ⑤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그 외상매출채권 처리에 관한 책임이 구매기업에게 있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대행업무를 할 수 있기를 합니다.
-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제1항에서 규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
- ⑦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처리 중 결제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제3항에서 정한 결제순서에 해당하는 건 별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계좌 잔액보다 금액이 적은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.
- ⑧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 상환 및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결제 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반성장론(협력)대출의 종도상환에 따르는 환출이자는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게 지급됩니다.
- ⑨ 협력기업에게 지급할 외상매출채권 대금 중 제3조5항에 따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협력기업과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며, 구매기업은 에스크로 예치자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.

#### 제6조 (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

구매기업이 제4조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를 합니다. 다만,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일부라도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을 실행한 경우나 상생매출채권이 발행 된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,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결제하기로 합니다.

#### 제7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

- ① 은행은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동반성장론 총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.  
(거래조건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“□”에 “V” 표시 및 관련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

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	금 원
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	금 원
이자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 ) + 가산금리( )% 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( )%
지연배상금률	지연배상금률은 제7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( )%를 더하여 결정하며, 최고 연( )%로 합니다.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
변제방법	개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

\*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결제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② 구매기업은 제1항에 의해 대출 취급된 외상매출채권 및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집니다.
- ③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 대출을 취급한 경우,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을 상환합니다.
- ④ 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당일만기대출을 당일중 상환 시 이자는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 다만, 당일중 상환되지 않은 당일만기 대출에 대하여는 당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⑤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을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1차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(가)압류 통지를 받거나, 1차협력기업으로부



터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,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합니다.

#### 제8조 (거래조건)

① 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채권의 통보기한	(        )일 이내
② 1차협력기업의 대출취급 및 상생매출채권 발행 가능일	구매기업이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한 날 (외상매출채권 발행일) + (        ) 은행영업일부터
③ 협약서의 유효기한	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까지 (※ 최장 1년 이내)

#### 제9조 (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)

- ① 은행은 협력기업별로 약정한도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협력기업의 대출신청을 받기로 하며,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및 동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을 취급할 수 있기를 합니다.
- ② 협력기업은 이 협약에 의하여 은행에게 양도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이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출신청 시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정보를 제출(전산입력)하여야 하며, 협력기업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달름으로 인하여 은행이 입을 수 있는 금전적인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협력기업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.
- ③ 1차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은 제8조2항에서 정한 대출취급가능일부터 대출을 취급 할 수 있기를 합니다.

#### 제10조 (대출의 취급 및 제한)

- ① 구매기업 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협력기업이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 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의 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은행영업일에 대출취급하기로 합니다.

#### 제11조 (한도 감액, 정지)

-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, 은행은 구매기업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7조에서 정한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및 이 협약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협력기업의 대출취급 금지, 외상매출채권거래, 상생매출채권거래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##### 1. 국가경제 ·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

- 가.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- 나.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다.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
- 라.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 ·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

##### 2. 구매기업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

- 가.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당행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(2단계 이상 등)한 경우
- 나.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/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
- 다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
- 라.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##### 3.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제11조의 2에 의하여 거래 제한될 때

-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,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.

#### 제12조 (정보제공의 동의)

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MP 및 협력기업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

- ① MP에게는 본인에 관한 사업자정보 및 채권발행내역, 결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.
- ② 협력기업에게는 본인에 관한 사업자정보 및 채권발행정보, 결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.

#### 제13조 (협약서 효력)

-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제8조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의해 이미 통지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근거로 하여 발



행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  
④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상충되는 사항은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#### 제14조 (관할법원의 합의)

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#### 제15조 (기타 특약사항)

(서명날인)

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.

20 년 월 일

(은행)  
주식회사 하나은행

(구매기업)  
기업명 :

주 소 :

지점장(인)

(인)

주 소 :

본인은 「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 
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협약을 체결합니다.

구매기업

(인)

